

● 전국도서관대회 제3주제발표

學校圖書館과 圖書館法 改正方向

李 正熙

<龍山工高 司書教師>

I. 序 言

現時點에서 圖書館法 改正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2000년대 정보 사회에서의 圖書館像을 생각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도 圖書館法 改正方向이란 주제를 놓고 순간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2000년대 정보사회의 圖書館像에 알맞는 방안이 아니라 지난 20여년 동안¹⁾ 圖書館法을 개정해 보려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애쓰면서 전의하였던 조건들만이 머리속을 가득히 메우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이웃 다른 나라에서는 學敎圖書館法이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더 발전적으로 學校圖書館을 운영하기 위한 改正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²⁾ 우리의 경우는 도서관법에 學校圖書館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는 정도이면서도 1963년도에 제정 공포된 이래 개정의 필요성을 수없이 전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속시원한 정조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未來像과 관계가 있는 改正方向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동안 改正하여 보려고 애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조건들만 나열하여야 할 형편이다.

그러니 발전적 施策을 위한 方向提示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들추어 보면서 꼭 해결되어져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II. 그동안 提示되었던 問題點

그동안 수없이 전의되었거나³⁾ 論文으로 발표되었던 문제점을 발췌하여 요약해 보면 다

- 1) 우리나라 圖書館法이 1963. 10. 28. 법률 제1424호로 공포되었으나 學校圖書館과 관련이 있는 教育法 改正問題와 圖書館法施行令 制定에 대한 建議書는 1964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2) 深川恒喜 等編, 學校圖書館事典, 東京: 第1法規出版社, 昭和45(1970), p. 384~405, 407에 서 「日本の 경우는 1953年에 學校圖書館法이制定公布되어 1958年에 1次 改正되고 1966年에 2次 改正되었으면서도 다시 改正할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음과 같다.⁴⁾

첫번째로는, 司書教師의 進路問題이고,
 두번째로는, 學校圖書館 運營費(豫算)問題이고,
 세번째로는, 國民學校와 中學校에 司書教師 配定(T/O)問題이고,
 네번째로는, 學校司書의 法的地位와 T/O 配定問題이고,
 다섯번째로는, 자료의 磨滅·破損 내지는 紛失問題이고,
 여섯번째로는, 司書教師의 勤務時間 問題이고,
 일곱번째로는,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 司書教師의 資格基準 問題이고,
 여덟번째로는, 圖書館主任教師의 制度化 問題 등이다.
 이들 문제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다.

I. 司書教師의 進路問題

教育法 제79조 제1항<별표>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은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司書教師의 경우는 1, 2급의 구분 없이 司書教師로만 되어 있다. 司書教師가 2급정교사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法的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12차 개정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8호) <별표 20>에서 司書教師의 가산호봉을 2급정교사의 가산호봉과 같이 17호봉에서부터 출발하게 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司書教師의 資格規定에 1, 2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2급정교사로 취급을 받았던 司書教師가 1급사서교사로 진급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1급사서교사이면 어떻고, 2급사서교사이면 어떠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주임교사임용규정(8차개정 1975. 10. 10. 문교부훈령 제209호) 제4조에 보면 「주임교사는 1급정교사 자격(교장·교감·교도교사 자격증 포함)을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교도주임교사는 교도교사 자격증, 중등학교 체육주임교사는 체육교사 자격증, 국민윤리주임교사는 윤리 또는 사회과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하며, 체육 주임교사와 과학주임교사 및 분교장주임교사는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司書教師로

3) 建議書中 대표적인 것을 建議書內容·建議기관·建議日순으로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도서관 운영비를 등록금고지서에 독립시켜 줄 것, 서울특별시학교도서관협의회, 1970. 8.
- ② 學校圖書館 育成發展을 위한 建議, 圖協 全南地區協議會, 1977. 12. 3.
- ③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교육법 개정, 한국도서관협회, 1981. 4. 8.
- ④ 民願의 所在를 中心으로 한 學校圖書館의 諸般問題點과 그 解消方案, 학교도서관부회, 1982.

4) 關係 論文 중 중요한 것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金坪勤, 學校圖書館 關係法規에 관한 考察, 「圖書館研究」, Vol. 22, No. 2, 1981. p. 2~22.
- ② 郭東哲, 現行法上 司書教師의 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國會圖書館報」Vol. 22, No. 1, 1985. p. 77~86.
- ③ 李正熙, 우리나라 學校圖書館 司書教師를 위한 法的 待遇, 「國會圖書館報」, Vol. 12, No. 6, 1975. p. 18~25.

일단 발령받은 사람이 주임교사가 되려면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에 관계가 되어서 주임교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法으로 規定되어 있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1986. 4. 26. 개정 대통령령 제11891호) 제34조(가산점) 제6호에 「1급정교사가 주임교사로 근무할 경력에 대하여는 1년마다 0.5점씩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條項에서도 司書教師는 근무평점가산점에서 2.5점이라는 점수는 주임교사가 될 수 없는 法의 規制 때문에 영원히 바라볼 수 없는 점수가 되고 있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나열한 것 중에서 여덟번째로 지적한 「圖書館主任教師를 制度化하여 줄 것을」 전의한 것도 學校圖書館의 기능과 운영상의 중요성에서 제기된 요인도 있지만 교감강습을 받으려면 주임교사의 경력이 있어야 되게 되어 있는 법적 문제 때문에 야기된 요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요인들 때문에 司書教師로 일단 발령을 받으면 1급정교사의 강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1급정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임교사를 거쳐서 교감강습을 받을 수 있는 진로의 機會均等의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學校圖書館 運營費의 문제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發興期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 豫算捻出의 근간은 師親會費였다. 도서구입비를 중심으로 圖書館運營費 전반을 師親會費에서 염출하였다. 심지어는 司書教師의 인건비까지도 師親會費에서 지출하였다. 하기야 문교부에서 司書教師 T/O를 배정받아 최초로 전국에 33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한 것이 1968년 2월 26일자이니 그 이전의 司書教師는 법정 T/O가 아니기 때문에 그 財源을 사친회비에서 염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 3월에 育成會法이 발표되면서 學校圖書館運營費는 육성회비에서 일체 지출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代置의 방안은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學校圖書館은 그 運營豫算을 갑자기 일시에 상실하고 말았다.

그 후에 (1970. 8 이후) 學校圖書館運營費를 市費로 보조해 주든지, 아니면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도서관 운영비」를 신설하여 학생 1인당 월 100원 정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전의를 수없이 하였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때의 이유로는 中·高等學校가 앞으로 평준화가 되게 되어 있으니 그 때에는 市費로 보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준화가 되고 教育稅까지 징수하게 되어도 학교도서관운영비는 市費로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學校圖書館運營費의 財源은 학생들의 특별활동비인 학도호국단비에서 불과 몇십만 원 정도를 얻어 쓰고 있다. 이것도 각 시·도별 각 학교마다 형편이 각각 다르니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 國民학교와 중학교에 司書教師 T/O 配定의 문제

다음〈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國民학교와 중학교의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내에는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다.

〈별표〉⁵⁾

구 分	학교수	도서관수	이 용 자 수	비 고
국 민 학 교	423	(262)	(1,328,721)	
중 학 교	298	5 (229)	94,047(1,176,263)	
고 등 학 교	213	46 (147)	1,434,364(2,486,006)	

※ ① () 안은 도서실임 ② 서울특별시의 통계임

그런데도 司書教師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각 학교마다 一般教師가 事務分掌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일반교사가 담임도 맡고 수업도 하면서,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아 정서가 데밀라서 問題學生이 많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司書教師의 T/O 를 배정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나열한 일곱번째의 “國民學校와 中等學校 司書教師의 資格基準 問題”가 지적된 것은 현행 司書教師의 자격 구분이 初等과 中等으로 나누어 있지 않으니, 국민학교에 司書教師를 배정하게 될 경우 혼선이 올 것이라는 해석에서이다.

4. 學校司書의 法的 지위와 T/O 配定의 문제

여기서 學校司書라 함은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司書教師 이외의 다른 직원을 조무원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學校司書란 職名으로 바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무원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學校司書란 명칭을 사용하여 앞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職名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學校司書의 법적 지위도 보장해 주면서 初·中·高等學校 도서관에 司書教師 T/O 이외에 學校司書의 T/O 도 배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현재 각급 학교도서관에 여러가지 모양의 學校司書가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資格規定에서부터 보수문제에 따른 財源確保 및 법적인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앞에서 문제점으로 나열하였던 여섯번째의 “司書教師의 勤務時間”과도 관계가 있다. 현재 일선 學校圖書館의 開館時間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개관하는 데가 대부분이며, 이보다 훨씬 늦게까지 개관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司書教師 한 사람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침 8시부터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오후에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또한, 어떤 학교에서는 숙직교사 책임하에 自習室化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아물든 어떤 형태로 운영하건간에 司書教師의 근무시간은 엉망이며, 이에 따라서 學校圖書館運營마저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으니 學校圖書館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교육통계연보, 1986. p. 50, 68.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게 하기 위한 改善方案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 學校司書를 배정하여 근무시간을 서로 조절하여야 한다고 본다.

5. 資料의 磨滅・破損 및 紛失의 문제

모든 도서관의 자료는 磨滅되기도 하고 破損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한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그 성격상 다른 도서관의 자료보다 도서의 裝訂面이나 종이질이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다. 그런데다가 이용자가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이란 점에서 마멸도 잘 되고 破損도 잘 되고, 분실되는 도서는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많다. 게다가 國・公立 學校일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법적 基準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쇄도하고 있다.

III. 結論

위에서 그동안 견의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나열하였는데 이것을 도서관법 개정의 향방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① 設置・運營・監督廳의 問題, ② 學校圖書館豫算의 問題, ③ 司書教師와 學校司書의 問題, ④ 學校圖書館 基準의 問題 등으로 나누어서 그 골격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I. 設置・運營・監督廳의 問題

初・中・高等學校에 도서관 설치 조항을 권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義務規定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 내지는 도서실이 어떤 수준의 형태가 되었건 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中・高等學校 평준화 작업이 시작된지도 꽤 오래 되었으니 이제는 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별의 시설기준도 평준화하여 각 지역, 또는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學習環境의 균등을 도모할 시기라고 본다.

또한, 요즘 시험문제의 選多型, 또는 객관식 출제방식을 중심으로 한 自習書式 學習環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教育環境構造의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는 모를지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教育與件으로 지향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각급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 것만으로써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단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 도서관이 개선된 教育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設置目的이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학교도서관의 운영목표 또는 기능을 자료의 薦集・整理・保存・利用 및 學習場(공부방)적인 소극적 개념을 뛰어넘어 教育課程(Curriculum)의 일부분이 되어 學校教育課程 전개 및 수업과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한 몫을 하면서 건전한 교양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指向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에 대한 行政的指導・監督廳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서 文教部職制에 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담당局이나 담당課를 독립시켜 달라고 수차에 걸쳐 견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항(사회교육과) “6”에 보면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원·육성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직제(3차개정 1985.2.27. 대통령령 제11650호)제8조(학무국)제6항(사회체육과)“4”에 「도서관 운영의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圖書館 指導·監督 계통은 문교부에는 사회직업교육국 사회교육과이며,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에는 학무국 사회체육과이다. 그런데 大學圖書館의 指導·監督權만은 대학국 대학학무과에 있다(문교부직제 제12조 제5항“4”).

이에 반하여 일선 각급 학교의 형편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의 대부분의 指導·監督權이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학무국 초등교육과에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무국 중등교육과에 있다. 그런데 유독 학교도서관만이 사회체육과에 있으면서 그것도 도서관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지도·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文敎部職制上에 독립된 局이나 課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大學圖書館의 지도·감독권이 大學局 대학학무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初·中·高等學校 도서관의 지도·감독권도 문교부직제 제11조(보통교육국)제3항(교육행정과)에 두고, 사회교육과에서 맡고 있는 지도·감독은 初·中·高等學校와 大學圖書館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만을 지도·감독하게 하며, 각 시·도 교육위원회 직제에도 국민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무국 초등교육과에서 맡고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무국 중등교육과에서 맡게 하면서, 圖書館學을 전공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실질적인 指導·育成·監督 이 이루어지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學校圖書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學校圖書館 豫算의 問題

각급 학교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運營目的도 뚜렷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이를 뒷바침할 예산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學校圖書館이 되고 만다. 현재의 실정이 그러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圖書館運營費를 학도호국단비에서 얄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도 힘들어서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豫算問題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受益者負擔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등록금고지서에 현재「수업료」·「육성회비」·「학생회비」등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 「도서관운영비」를 학생 1인당 월 300원 정도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1970년도에 建議書를 냈을 때에, 앞으로 市費나 國庫에서 보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教育稅까지 징수하게 되었어도 市費나 國庫에서 보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앞으로 市費나 國庫에서 보조하게 된다 할지라도 등록금고지서에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受益者負擔原則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 日本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내는 「학생도서비」·「師親會費」·「市費」등을 합하여 도서관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⁶⁾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육성회비」에 포함시켜서 내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 육성회비의 운영지침서에 보면 「학생복지비」와 「실험실습비」는 각각 전체의 3%와 5%를 쓰도록

6) 深川恒喜 等編, 學校圖書館事典, 東京: 第一法規出版社, 昭和45(1970), p. 49.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성회비에서 쓰게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에도 육성회비가 부족하여 일선 학교에서 애를 먹고 있다. 그러니 이 방법을 택한다면 육성회비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성회비에서 쓰도록 한다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점은 또 있다. 옛날에 師親會費에서 염출하여 쓰다가 育成會法으로 바뀌면서 도서비를 못 쓰게 된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없어지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니 등록금고지서에 「도서관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말한 학교도서관의 예산문제를 圖書館法이나 圖書館法施行令에 어떻게 언급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 1>의 사서교사 자격기준과 그 개정안

現 行 法		改 正 案	
사 서 교 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사 서 교 사 (1 급)	1. 중등학교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도서관(사서)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도서관(사서)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중등학교 사서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 사	교 사 (2 급)	교 사 (2 급)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도서관학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사범대학 도서관교육과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도서관(사서)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시 사서교사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도서관(사서) 교육과 졸업자.
			5.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7. 국민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서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도서관학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위의 자격기준은 정교사(1급)와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에 준하였음.

하느냐가 記述的인 문제이다. 실은 등록금고지서에 「도서관운영비」의 항목을 신설하는 일이나 육성회비에서 몇 %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現行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3. 司書教師와 學校司書의 問題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設置規定을 義務規定으로 할 경우, 사서교사의 配置規定도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현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司書教師의 T/O가 배정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교에만 배정되어 있다. 그것도 현행 教育法施行令의 教員配定條項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司書教師의 배정조항이 빠져 있다.

教育法施行令 제4장 제40조 제3항과 제43조 제3항에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교사」라는 개념에 司書教師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중·고등학교에는 司書教師의 배치규정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교사」에는 司書教師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 이유로는 「특수교사」란 개념에 司書教師가 포함되는지면 양호교사도 포함되어야 할텐데, 양호교사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아무튼 圖書館法에 사서교사의 配置規定을 의무규정으로 명백히 하여 教育法施行令에도 명백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서교사의 進路問題이다. 教育法 제79조 제1항 <별표1>의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아래의 改正案과 같이 1급과 2급으로 개정하는 것이 學校圖書館 발전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司書教師 資格基準을 개정하면서 초등과 중등의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동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지도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러워서 더 연구할 과제로 남긴다.

그 다음에는 學校司書와 그 T/O 배정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學校圖書館 開館時間이 아침 8시경부터 밤 10시가 넘다 보니 司書教師 한 사람으로는 근무 시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司書教師 및 學校司書 配定基準(案)

學 校 別	學 校 規 模	司 書 教 師	學 校 司 書
國 民 學 校	12學級 以下	兼任 1人	2人
	30學級 以下	專任 1人	3人
	31學級 以上	專任 1人	4人 以上
中·高等學校	6學級 以下	兼任 1人	1人
	18學級 以下	專任 1人	2人
	30學級 以下	專任 2人	3人
	31學級 以上	專任 3人	4人 以上

그래서 學校司書의 資格規定과 아울러 T/O 배정을 하여야 함도 시급하다. 현재 전문대학 圖書館科 졸업생들이 教職科目을 이수하고 실기교사(사서) 資格證을 취득하고 있으니 이들을 그대로 學校司書의 자격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司書教師와 學校司書의 T/O 배정 문제는 그동안 韓國圖書館協會에서 改正案으로 제시하였던 것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4. 學校圖書館基準의 問題

모든 法條文이 그러하듯이 圖書館法이나 圖書館法施行令, 또는 教育法이나 教育法施行令에 앞에서 말한 모든 것과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들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다고 본다.

현행 圖書館法 제25조 제2항에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開令으로 定한다」라고 하여, 同法施行令 제2조 제2항에 「法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각급 학교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學校施設・設備基準令(개정 1982. 8. 5. 대통령령 제10878호)의 <별표3>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현재 이러한 시설기준으로서는 學校圖書館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學校圖書館基準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겨우 도서관의 施設・設備基準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基本要件의 세부사항으로 부터서 司書教師와 學校司書의 配定基準, 자료의 구성과 構成比率 및 整理의 基準, 施設 및 設費・豫算의 운영 및 運營比率의 基準, 圖書館利用指導와 독서지도, 도서의 磨滅・破損・紛失의 基準 등의 광범한 것을 따로 文教部訓令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日本學校圖書館基準의 내용을 큰 항목만을 열거하여 보면 ① 原則 ② 機能 ③ 學校圖書館職員 ④ 學校圖書館資料 ⑤ 學校圖書館資料의 整理 ⑥ 建物・設備 ⑦ 經費 ⑧ 運營 ⑨ 圖書館의 利用指導 등으로 되어 있으면서, 施設・設備에 관한 것은 各級 學校別・學生數別로 구체적으로 圖表化하였다. 그것도 <별표1>에는 圖書・設備에 관한 基準이고, <별표2>에는 시청각자료의 設備基準 등으로 나누어 있다.⁷⁾

<별표 3>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分	열 람 좌 석 수	도 서 수
국민학교	보통교실 겸용	1 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 교	1 학급당 3 석 ·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 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학교	1 학급당 5 석 ·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 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7) 深川恒喜 等編, 學校圖書館事典, 東京: 第一法規出版社, 昭和45(1970). p. 396~402.